

1. 개정이유

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‘수사’ 중심으로 정립,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본 임용령에서 사용하는 ‘보안경과’ 용어를 ‘안보수사경과’로 변경
(안 제3조제1항제3호)
- 나. 업무 분야를 지칭하는 ‘보안’ 용어를 ‘안보’로 변경(안 제16조제4항제4호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보안경과”를 “안보수사경과”로 한다.

제16조제4항제4호 중 “보안”을 “안보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경과)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보안경과</u> 4. (생략)	제3조(경과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안보수사경과</u> 4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 (생략) ④ (생략) 1.·2.·3. (생략) 4. <u>보안</u>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<u>보안</u> 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 5. (생략)	제16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·2.·3. (현행과 같음) 4. <u>안보</u> ----- <u>안보</u> -----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	
연락처	(02) 3150 - 2828